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0. 6 선고 2021가단2087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개명전 이름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1. 6.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와 D(2019. 6. 30. C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41064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0. 'E 주식회사와 C은 연대하여 36,672,607원 및 위 돈 중 8,416,198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최후송달일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7.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4. 18. F 명의로 '2002.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는 2018. 12. 3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은 자녀들인 G, H, C 및 피고였고, 상속지분은 각 1/4이었다.

라. 망 F의 상속인들인 G, H, C 및 피고는 2020. 11. 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20.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등재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부터 존재하던 채권으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4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어머니인 F를 부양하면서 2007년경부터 어머니 F의 생활비 및 대출금 등을 부담하였으며, 망 F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도 그와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C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은 주식회사 I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카단161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에 대한 악의는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피고 주장의 기여분 산정 협의 또한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그 기여분이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경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J에 있는 K아파트 L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1층 내지 6층 각 959.28㎡

지하층 365.40㎡

평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노인정 55.92㎡

평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펌프실 26.40㎡

평벽돌 슬래브지붕 공중변소 6㎡

평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수위실 9.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J 대 13,2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N호²⁾

철근콘크리트조 84.9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323900분의 5810 -끝-

2) 소장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에는 '제5층 O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5층 N호'의 오키이다.

1) 2022. 6.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2018. 12. 30.자로 체결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 11. 6.자로 체결된’의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